

 <b>질병관리청</b>		<h1>보도참고자료</h1>	
배 포 일	2021. 2. 12. (총 28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7430
담당자	정 여 운		043-719-935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12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4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837명(해외유입 6,65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36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8,622건(확진자 8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1,9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03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98명으로 총 72,936명(88.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07명(치명률 1.8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12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84	155	25	11	41	6	1	0	2	103	6	6	10	2	4	4	4	4
누계	76,178	25,044	2,854	8,324	3,871	1,827	1,081	865	178	19,808	1,700	1,545	1,995	971	706	2,945	1,950	514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2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주)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9	0	9	1	7	2	0	6	13	13	6		
누계	6,659	39	2,979	1,153	2,179	286	23	2,858	3,801	3,642	3,017		
		(0.6%)	(44.7%)	(17.3%)	(32.8%)	(4.3%)	(0.3%)	(42.9%)	(57.1%)	(54.7%)	(45.3%)		

\* 아시아(중국 외) :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요르단 2명, 파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말레이시아 1명, 유럽 : 폴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2명), 아프리카 : 튀니지 1명(1명), 시에라리온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1.(목) 0시 기준	72,638	8,300	170	1,496
2.12.(금) 0시 기준	72,936	8,394	161	1,507
변동	(+)298	(+)94	(-)9	(+11)

\* 2월 11일 0시부터 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1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1.1명), 수도권에서 299명(77.9%) 비수도권에서는 85명(22.1%)이 발생하였다.

(주간 : 2.6일~2.12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2.12일(0시 기준)	384	299	19	12	15	29	6	4
주간 일 평균	356.0	284.0	12.7	13.0	16.1	22.6	5.0	2.6
주간 총 확진자 수	2,492	1,988	89	91	113	158	35	18

○ 수도권

(주간 : 2.6일~2.12일, 단위 : 명)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74	264	207	217	344	383	299	284.0	1,988
서울	142	141	111	86	169	177	155	140.1	981
인천	24	15	17	14	18	25	41	22.0	154
경기	108	108	79	117	157	181	103	121.9	853

- (서울 강동구 사우나 관련) 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이용자 7명, 가족 1명

- (서울 중구 콜센터4 관련)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서울 은평구 요양시설 관련) 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입소자 8명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구분) 교회 1 관련 20명(지표포함), 교회 2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6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2명(+1), 기타 12명(+7)

- (인천 서구 가족/지인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지인 7명(지표포함, +1), 가족 8명(+2), 노래방 관련 6명(+5)

- (인천 인테리어업 관련) 2월 1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6명(+1), 가족의 동료 1명(+1), 기타 1명(+1)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82(+17)	교인 및 교인 가족 77명(지표포함 +13), 지인 1명(+1), 기타 4명(+3)
② 보습학원 관련	41(+5)	학원생 28명(+1), 학원 교사 2명, 기타 11명(+4)

-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직원 8명(지표포함), 교인 16명(+5)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구분) 방문자 31명(지표포함, +16), 가족 5명(+1), 기타 6명(+1)

○ 호남권

(주간 : 2.6.일~2.12.일, 단위 : 명)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4	14	7	11	17	16	12	13.0	91
광주	12	10	7	8	14	9	6	9.4	66
전북	1	-	-	3	2	7	2	2.1	15
전남	1	4	-	-	1	-	4	1.4	10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22(+1)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기타 7명(+1)
③ 어린이집 관련	2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11명
④ 광산구 광주 TCS*	142(+1)	학생 89명(+1),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기타 22명
⑤ 캠프 관련	35	방문자 12명, 추가전파 23명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광주 서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1 관련	97(+2)	교인 53명(지표포함, +1), 가족 22명(+1), 기타 22명
② 교회 2 관련	18	교인 15명, 가족 1명, 기타 2명
③ 어린이집 관련	11	원아 3명, 교직원 2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④ 고등학교 관련	7	학생 7명
⑤ 청소년체 관련	11	종사자 6명, 가족 5명

○ 경북권

(주간 : 2.6.일~2.12.일, 단위 : 명)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1	12	25	13	16	11	15	16.1	113
대구	17	11	20	9	14	10	11	13.1	92
경북	4	1	5	4	2	1	4	3.0	21

-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2월 1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일가족 관련	9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3명
② 치과 관련	8	이용자 5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
③ 음식점 관련	11(+11)	방문자 7명(+7), 가족 3명(+3), 기타 1명(+1)

○ 경남권

(주간 : 2.6.일~2.12.일, 단위 : 명)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6	12	11	17	27	36	29	22.6	158
부산	14	8	7	9	18	29	25	15.7	110
울산	2	-	-	3	-	2	-	1.0	7
경남	10	4	4	5	9	5	4	5.9	41

- (부산 동래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1 관련	5(+2)	이용객 4명(+2), 종사자 1명
② 목욕탕 2 관련	5	이용객 3명, 종사자 2명

- (부산 중구 재활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재활병원 관련	24	종사자 5명, 환자 10명, 간병인 5명, 가족 4명
② 목욕탕 관련	14(+4)	이용객 12명(+2), 가족 2명(+2)
③ 운송회사 관련	4	직원 2명, 가족 1명, 기타 1명

\* (지역) 부산 40명(+5), 경남 1명(-1<sup>명</sup>), 서울 1명 \*\* 신고지 기준으로 재분류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10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7명, 가족 1명
② 병원 관련	11(+2)	종사자 3명(+1), 환자 7명(+1), 가족 1명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적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을 계기로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3차 유행 지속·변이바이러스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동안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외 방문·모임은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영상 통화 활용, △ 밀집·밀폐·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는다.

- 또한,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방안시설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추모한다.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철저히 준수, △증상이 있으면 가족·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는다.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기차·버스 내 취식 금지·대화 자제, △휴게소 등 이용 시간 최소화하고,

- 귀가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외출은 자제하도록 한다.

○ 정부는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생활치료센터·응급실 등)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7.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8.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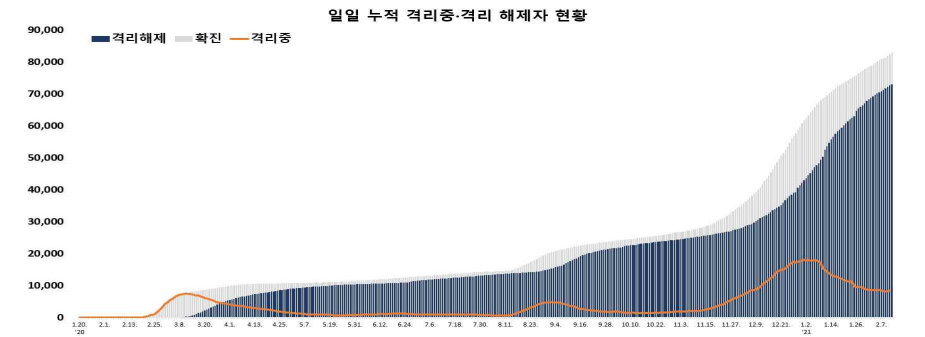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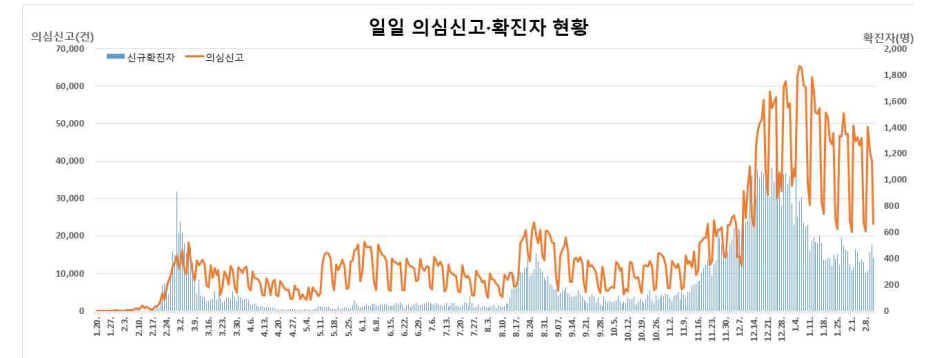
1. **일일 확진자 현황** (2.12. 0시 기준, 82,837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1.(목) 0시 기준	6,070,008	82,434	72,638	8,300	1,496	81,614	5,905,960
2.12.(금) 0시 기준	6,093,369	82,837	72,936	8,394	1,507	80,861	5,929,671
변동	+23,361	+403	+298	+94	+11	-753	+23,711

\* 2월 11일 0시부터 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2. 0시 기준, 82,83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55	3	25,885	(31.25)	265.94
부산	25	2	2,978	(3.60)	87.28
대구	11	1	8,461	(10.21)	347.26
인천	41	2	4,087	(4.93)	138.26
광주	6	0	1,941	(2.34)	133.25
대전	1	0	1,131	(1.37)	76.72
울산	0	0	950	(1.15)	82.82
세종	2	0	203	(0.25)	59.30
경기	103	2	21,233	(25.63)	160.24
강원	6	0	1,765	(2.13)	114.57
충북	6	0	1,632	(1.97)	102.04
충남	10	3	2,145	(2.59)	101.06
전북	2	0	1,073	(1.30)	59.04
전남	4	0	772	(0.93)	41.40
경북	4	0	3,083	(3.72)	115.79
경남	4	0	2,093	(2.53)	62.27
제주	4	0	547	(0.66)	81.55
검역	0	6	2,858	(3.45)	-
총합계	384	19	82,837	(100)	159.7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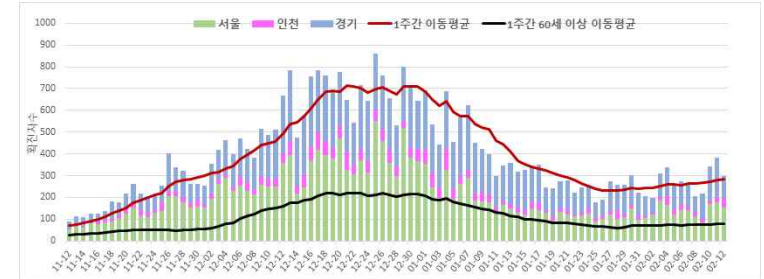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8,394	3,886	327	147	354	189	44	10	7	2,097	117	86	155	42	49	120	108	25	631
격리해제	72,936	21,648	2,553	8,103	3,682	1,733	1,072	903	195	18,680	1,614	1,489	1,957	978	716	2,893	1,975	521	2,224
사망	1,507	351	98	211	51	19	15	37	1	456	34	57	33	53	7	70	10	1	3
합계	82,837	25,885	2,978	8,461	4,087	1,941	1,131	950	203	21,233	1,765	1,632	2,145	1,073	772	3,083	2,093	547	2,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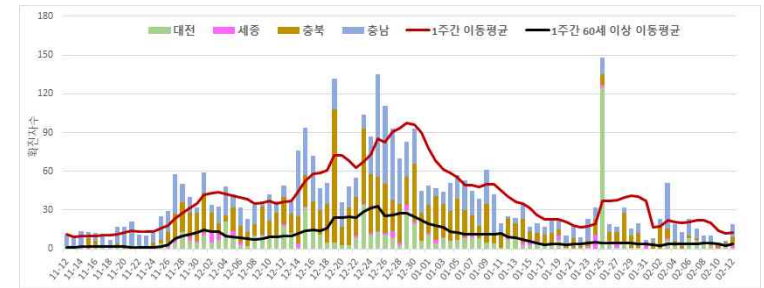
\* 2월 11일 0시부터 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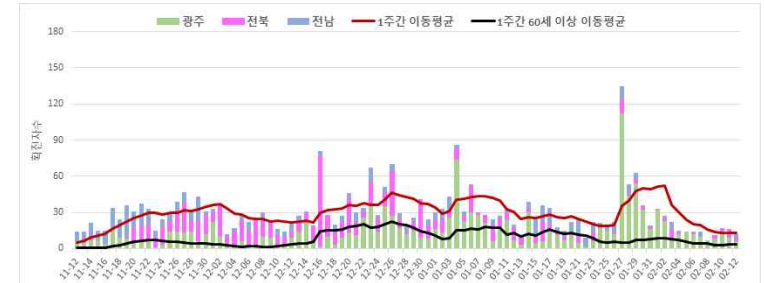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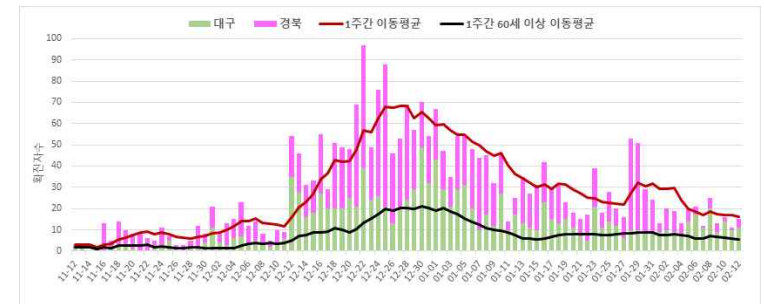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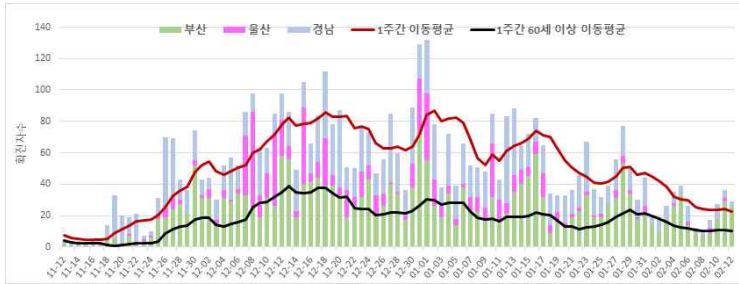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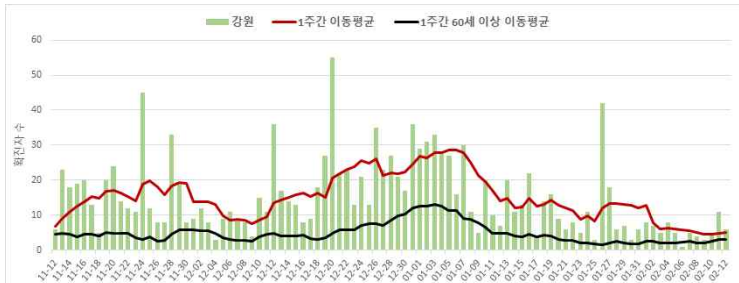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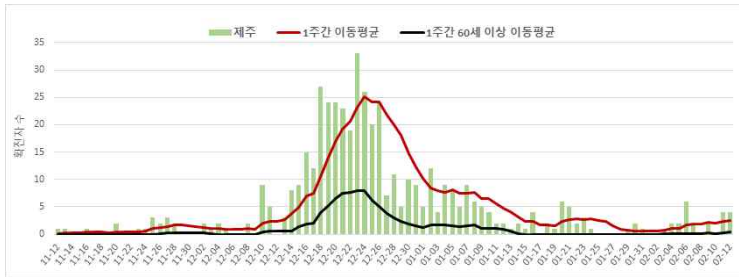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3]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12. 0시 기준, 82,83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03 (100)	82,837 (100)	159.77
성별	남성	40,776 (49.22)	157.66
	여성	42,061 (50.78)	161.87
연령	80세 이상	4,102 (4.95)	215.98
	70-79	6,353 (7.67)	176.12
	60-69	13,022 (15.72)	205.26
	50-59	15,533 (18.75)	179.22
	40-49	11,904 (14.37)	141.90
	30-39	10,596 (12.79)	150.40
	20-29	12,525 (15.12)	184.02
	10-19	5,561 (6.71)	112.56
0-9	3,241 (3.91)	78.12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2.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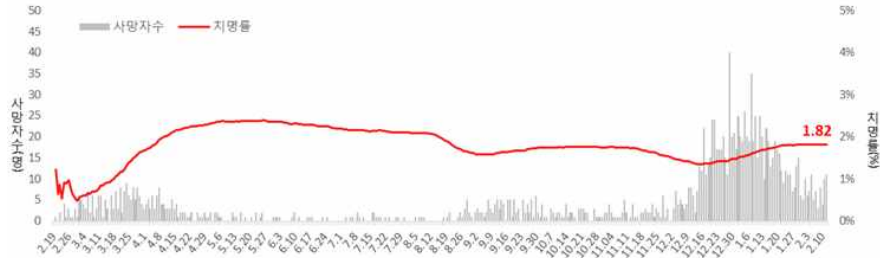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1 (100)	1,507 (100)	1.82
성별	남성	749 (49.70)	1.84
	여성	758 (50.30)	1.80
연령	80세 이상	857 (56.87)	20.89
	70-79	409 (27.14)	6.44
	60-69	174 (11.55)	1.34
	50-59	49 (3.25)	0.32
	40-49	12 (0.80)	0.10
	30-39	6 (0.40)	0.06
	20-29	0 (0.00)	0.00
	10-19	0 (0.00)	0.00
0-9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증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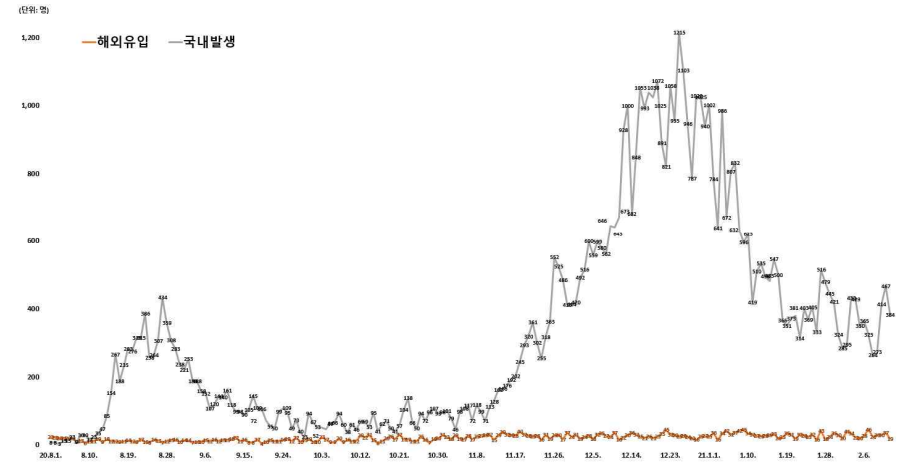
구분	1.30.	1.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계	231	229	225	224	220	211	200	197	190	188	189	184	170	161

구분	위증증	( % )
계	161	( 100.0 )
80세 이상	30	( 18.6 )
70-79세	63	( 39.1 )
60-69세	51	( 31.7 )
50-59세	12	( 7.5 )
40-49세	2	( 1.2 )
30-39세	3	( 1.9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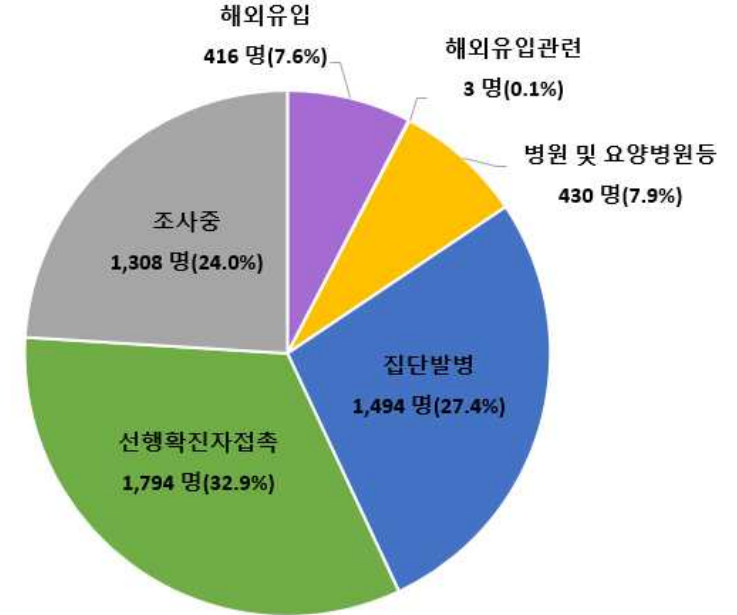
\* 위증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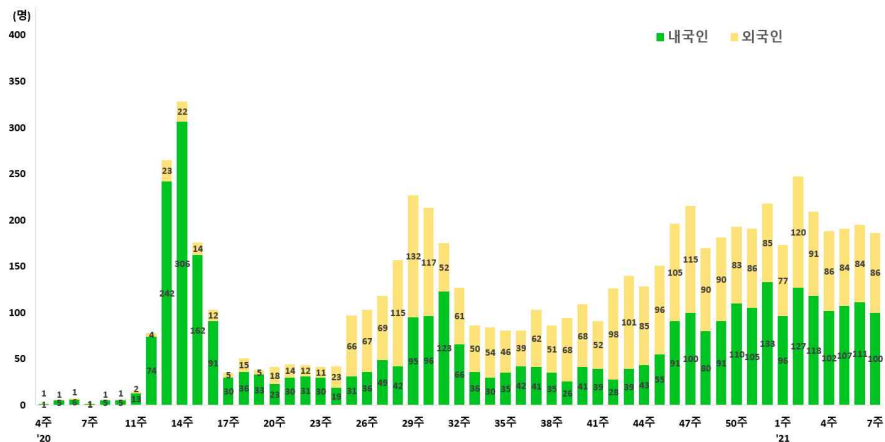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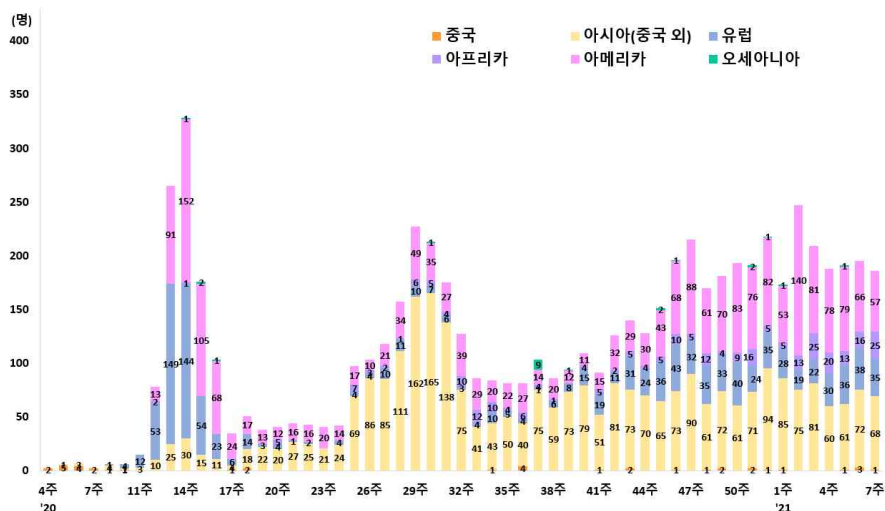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30일 0시~21.2.12일 0시까지 신고된 5,44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5,885	841	9,676	8	9,579	89	8,450	6,918	158
부산	2,978	124	1,842	12	1,774	56	611	401	27
대구	8,461	137	6,230	4,512	1,711	7	1,154	940	12
인천	4,087	216	1,927	2	1,915	10	1,261	683	43
광주	1,941	114	1,532	9	1,517	6	163	132	6
대전	1,131	50	610	2	607	1	300	171	1
울산	950	85	674	16	654	4	116	75	0
세종	203	25	90	1	88	1	47	41	2
경기	21,233	1,425	8,220	29	8,113	78	7,132	4,456	105
강원	1,765	65	1,000	17	982	1	457	243	6
충북	1,632	87	866	6	853	7	430	249	6
충남	2,145	150	1,058	0	1,057	1	559	378	13
전북	1,073	102	741	1	739	1	126	104	2
전남	772	66	535	1	524	10	95	76	4
경북	3,083	138	2,160	565	1,594	1	469	316	4
경남	2,093	143	1,304	33	1,239	32	368	278	4
제주	547	33	346	0	345	1	94	74	4
검역	2,858	2,858	0	0	0	0	0	0	6
합계	82,837	6,659	38,811	5,214	33,291	306	21,832	15,535	403
	(%)	(8.0)	(46.9)	(6.3)	(40.2)	(0.4)	(26.4)	(18.8)	

<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과목순교사모임 관련(172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4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97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23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7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2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4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5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2.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검사소 수 (개소) <sup>1)</sup>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도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도도말 PCR <sup>2)</sup>	
신규	0	18,622	18,565	0	57	0	81
서울	0	8,411	8,378	0	33	0	40
경기	0	8,585	8,562	0	23	0	29
인천	0	1,626	1,625	0	1	0	12
누계	131	1,761,465	1,740,077	4,235	17,105	48 <sup>3)</sup>	4,965
서울	53	822,529	814,713	1,485	6,311	20	2,594
경기	70	799,179	785,881	2,719	10,552	27	2,022
인천	8	139,757	139,483	31	242	1	34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도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6.~2.12.)

구분	2.6.	2.7.	2.8.	2.9.	2.10.	2.11.	2.1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8,581	44,307	34,963	82,942	77,291	81,260	41,983	441,327	7,854,83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46,175	23,622	21,221	49,209	42,618	39,985	23,361	246,191	6,093,369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32,406	20,685	13,742	33,733	34,673	41,275	18,622	195,136	1,761,465
신규 확진자 수(명)	393	371	288	303	444	504	403	2,706	82,837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sup>3)</sup>	56	67	47	31	98	87	81	467	4,965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6,923,756	464,412	90,930	2,802	1.72	8,134.07
인도	10,871,294	155,360	12,923	108	1.43	787.77
브라질	9,599,565	233,520	51,486	1,350	2.43	4,515.32
러시아	4,027,748	78,687	15,038	553	1.95	2,760.62
영국	3,985,165	114,851	13,013	1,001	2.88	5,869.17
프랑스	3,328,987	80,032	24,631	295	2.40	5,097.99
스페인	3,023,601	63,704	8,298	86	2.11	6,460.69
이탈리아	2,668,266	92,338	12,947	336	3.46	4,410.36
터키	2,556,837	27,093	8,642	95	1.06	3,033.02
독일	2,310,233	63,635	10,237	666	2.75	2,756.84
콜롬비아	2,166,904	56,507	5,442	217	2.61	4,257.18
아르헨티나	1,993,295	49,556	7,794	158	2.49	4,409.94
멕시코	1,946,751	168,432	10,738	1,701	8.65	1,510.28
폴란드	1,570,658	40,177	7,013	456	2.56	4,155.18
이란	1,488,981	58,686	7,585	61	3.94	1,772.60
남아프리카공화국	1,482,412	47,145	3,159	276	3.18	2,499.85
우크라이나	1,258,094	24,058	5,039	124	1.91	2,878.93
페루	1,196,778	42,626	5,557	159	3.56	3,626.60
인도네시아	1,183,555	32,167	8,776	191	2.72	432.74
체코	1,064,952	17,772	9,537	130	1.67	9,952.82
네덜란드	1,012,908	14,589	3,226	78	1.44	5,923.44
캐나다	810,797	20,909	2,677	74	2.58	2,150.66
포르투갈	774,889	14,718	4,387	161	1.90	7,596.95
칠레	760,576	19,105	2,387	21	2.51	3,982.07
루마니아	752,482	19,135	3,048	79	2.54	3,919.18
방글라데시	539,153	8,239	388	10	1.53	327.35
필리핀	541,560	11,401	1,333	105	2.11	494.12
일본	410,012	6,678	1,826	121	1.63	324.12
헝가리	381,875	13,444	1,862	97	3.52	3,936.86
네팔	272,349	2,047	134	0	0.75	935.91
미얀마	141,487	3,181	39	1	2.25	260.09
중국	89,748	4,636	12	0	5.17	6.24
키르기스스탄	85,328	1,437	75	1	1.68	5.93
우즈베키스탄	79,303	622	66	1	0.78	62.69
태국	24,104	80	201	0	0.33	34.53
베트남	2,109	35	39	0	1.66	2.17
대한민국	82,837	1,507	403	11	1.82	159.81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입중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li>▶ 결혼식 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사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b>홀덤편</b>	▶ <b>집합금지</b>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li>▶ <b>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li>▶ <b>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b></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계·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b></li> <li>* 중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li> <li>▶ <b>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b></li> <li>▶ <b>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b></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b></li> <li>▶ <b>숙박시설 운영 금지</b></li>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결혼식당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b></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b></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ul>
아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li> </ul>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li> <li>▶ <b>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b></li> <li>▶ <b>집객행사 금지</b></li> <li>▶ <b>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b></li>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b>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b> ▶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 ▶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 ▶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 ▶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b>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사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형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요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 ▶ <b>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 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sup>2</sup>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접기·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m<sup>2</sup>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 <sup>2</sup>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b>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일일 05시까지)운영 중단</b>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b>단체로는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b>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 <b>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b> ▶ <b>집객행사 금지</b> ▶ <b>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b>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b>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b> ▶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 ▶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 ▶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 ▶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붙임 6** |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붙임 7** |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17명(+2)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417 (+2)	
광주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42 (+1)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35	울산 한다연구소 5명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방문자 관련 19명 포함 * 경기 1명을 서울로 재분류
	예수복제 캠프 관련 (1.18.~1.20.)	54 (+1)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1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184	IEM 143명 / MTS 41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5)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붙임 8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상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폐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체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의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술기자협회